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140호

다. 발의일자 : 2018. 9. 17

라. 회부일자 : 2018. 10. 1

### 2. 제 안 사 유

- 환경보전 시책 협력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환경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함.

### 3. 주 요 내 용

가. 모든 사회 주체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가 규제조치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법령위반 행위 등으로 명시함(안 제22조)

다.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주체들이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라. 대기 항목 측정방법 삭제 및 PM-2.5 농도기준 추가(안 별표 1)

####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 조치 :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 시책 협력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환경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 사항 규정 등(안 제1조 및 제24조의2, 안 제22조)
  - 동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서울시·자치구·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서울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서울시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공공·민간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책임 있는 실천과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보전 시책 추진 및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임.
  - 따라서 안 제24조의2와 같이 서울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수탁사업, 보조금 등의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공공 기관, 사업자, 단체, 시민 등에게 환경보전 시책 협력에 대한 책무를 규정

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민간의 실효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됨.

-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안 제24조의2는 벌칙 규정이 없이 사회 주체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권고적 규정에 해당되므로 상위법 위반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현행 조례 제22조는 규제조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규제 조치의 기준을 ‘우려가 있는 행위’로 막연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 안 제 22조와 같이 ‘우려가 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규제조치의 기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 2) 환경기준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1)

- 현행 조례 별표 1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8개 항목에 대한 농도기준과 측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항목 중 미세먼지의 경우는 PM10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음.
- 기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미세먼지 PM10에 대해서만 규정 하였지만, PM2.5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PM2.5를 추가하였으며, 2018년 3월 27일 개정을 통해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 따라서 안 별표 1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강화된 환경 기준을 반영하여 PM2.5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음.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미세먼지 PM2.5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지 7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후 상위법 개정 사항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